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재구축 방안 - 배용수

언제나 건강

어름내 약해진 체력... 환절기 건강관리 조심! - 김용서

일상 속 경제여행

다시 올 수 없는 옛날이여...비용 - 오영수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높여라!

● 리포트 섹션은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공간. 그 중 하나로 지난 2013년 5·6월호(제9호)부터는 연간기획으로 지방공기업과 지방재정 위기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경영위기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주요 개혁과제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쉬어가는 코너로 '언제나 건강' 과 '일상 속 경제 여행' 도 게재한다.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재구축 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활발하게 설립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공기업 제도와 수비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수비범위 재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기업을 통해 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 및 재정확충의 수단으로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활발하게 설립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존재한다. 본 글의 목



글 _ 배 용 수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적은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공기업 제도와 수비범위의 실태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수비범위 재구축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1.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와 설립 실태

가. 지방공기업의 수비범위

1) 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의 변천

1969년 제정 당시의 지방공기업법은 제2조에서 동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의 5가지를 지정하였다. 그밖에 자치단체가 임의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병원사업, 주택사업, 시장사업, 도축사업, 공익전당포사업, 택지조성사업 등 6개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까지 실제 지방공기업으로 설치된 것은 상수도사업, 궤도사업(지하철건설사업), 병원사업뿐이었다.

1980년 지방공기업법 개정 때에 의무적용사업이 위의 5개 사업 외에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사업이 추가되어 11개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임의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법 제정 당시의 6개 사업 중에서 공익전당포사업이 배제되고, 택지조성사업이 토지개발사업으로 확대되며, 통운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사업, 계량기검정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모두 10개 사업이 되었다.

1992년 개정에 의하여 의무적용사업으로서 11개 사업 외에 기존에 임의적용사업이던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이 의무적용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주차장사업이 새로 포함됨으로써 모두 15개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임의적용사업으로는 기존의 중기관리사업, 계량기검정사업이 빠지고 자동차터미널사업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모두 6개 사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의무적용사업 중 가스사업, 청소위생사업, 매장 및 묘지사업, 주차장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이 제외됨으로써 9개 사업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임의적용사업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의 적시를 배제하는 대신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5년 개정으로 의무적용사업은 의료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으로 되었고, 기존의 임의적용사업에 관한 포괄적 규정 외에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이 임의적용사업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상의 대상사업이 변천해온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의 변천

구분	의무적용사업	임의적용사업
1969년 제정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병원, 주택, 시장, 도축, 공익전당포, 택지조성, 기타 기업으로 경영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
1980년 개정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지방도로, 하수도, 청소위생, 주택, 의료, 매장 및 묘지	시장, 도축장, 토지개발, 통운, 중기관리, 관광, 계량기검침, 체육장, 문화예술, 공원, 기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그 경비를 주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
1992년 개정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지방도로, 하수도, 청소위생, 주택, 의료, 매장 및 묘지, 주차장, 토지개발, 시장, 관광	도축장, 통운, 자동차터미널, 체육장, 문화예술, 공원,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1999년 개정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의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005년 개정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관련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
----------	---	---

2)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시행을 통한 수비범위의 조정

2000년대 들어 뚜렷해진 지방공기업의 남설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의무화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08년 12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012년 9월 개정). 이 기준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나아가 출자·출연법인의 타당성검토 시 준용된다.

이 기준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단계와 주요 내용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 지방공사·공단 설립절차

단 계	내 용
설립방침 결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분석
설립방침 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안 마련 시도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립 기본방침 결정
설립 타당성 검토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설립심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시도와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조례제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의 설립 결정 조례 제정안 마련, 의회 심의, 조례 공포
설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등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임원 공모 및 임명 설립등기, 설립보고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2012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타당성검토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소정의 경력기준과 실적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은 민간의 경영참여가 곤란한가 여부를 개별 사업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표 3)과 같이 민간영역 침해사업을 예시함으로써 수비범위 설정에 있어 소극적 기준으로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표 3 민간영역 침해사업(예시)

- ⊗ 민간사업자와 경쟁 및 마찰 우려가 높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
- ⊗ 자본부족, 독과점 등 요인이 적고 민간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
- ⊗ 선량한 사회적 상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 규모의 경제가 작은 소규모 단기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
- ⊗ 기타 지역특성이나 주민의 정서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2012

나. 지방공기업의 사업분야별 설립 실태

2013년 1월 1일 현재 설립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수는 391개로서 지방직영기업 254개, 지방공사·공단 137개로서 직영기업이 전체 지방공기업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직영기업 중에는 상수도사업이, 지방공사·공단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다(표 4 참조). 기타 공사 중에는 도시개발 관련 공사가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 일반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설립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자본금(기본재산)을 출자(출연)하여 법적으로는 사법인에 속하지만 사실상 준지방공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출자·출연법인은 32개 설립되어 있으며, 주로 유통, 관광, 컨벤션 등의 사업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2013년 지방공기업 설립 실태

(단위 : 개)

유형	사업분야	사업수	사업내용
지방직영기업	상수도	116	주민에 상수도 공급
	하수도	87	하수도 처리
	공영개발	33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18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운영
	소계	254	
지방공사·공단	도시철도공사	7	도시철도 운영
	도시개발공사	16	택지, 주택, 산업단지 개발
	기타 공사	36	개발, 관광, 유통 등
	시설관리공단	78	일반 공공시설, 환경시설, 체육시설 등 관리
	소계	137	
계		391	
출자·출연법인		32	유통, 관광, 컨벤션 등

※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지방공기업 현황, 2013

한편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00년대 들어 지방공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지방공사·공단의 증가율이 직영기업보다 높았다. 직영기업 중에서는 하수도사업이,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2000년대 이후 공영개발사

표 5 시기별 지방공기업 설립 추이

(단위 : 개)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3년
지방직영기업	30	128	175	241	254
상수도	27	73	94	113	116
하수도		8	22	79	87
공영개발	3	34	44	33	33
지역개발기금		13	15	16	18
지방공사·공단		3	59	137	137
도시철도공사		1	4	7	7
도시개발공사		1	11	16	16
기타 공사		1	14	32	32
시설관리공단			30	82	82
계	30	131	234	378	391
출자·출연법인				33	32

※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지방공기업 현황, 2013

업과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정체되어 있다(표 5 참조). 출자·출연법인도 최근에는 그 수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2.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가. 영국

1) 중앙-지방관계

영국에서는 주민자치의 전통 때문에 정치는 모든 주민의 참여 속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일찍이 보급되어, 주민의 정치참여가 주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입법적,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의회가 결정하며, 지방정부의 업무처리가 위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통제를 가하게 된다.

영국의 광역 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는 주로 교육, 도서관, 복지 등의 사업을 행하고, 이에 비해 기초 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는 환경, 위생, 건축, 소도로 관리, 쓰레기 수집, 개발규제, 공원 관리 등을 행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임입법, 조례 승인, 직원 임면, 사업계획 승인, 지휘·감독, 회계감사, 기채 승인, 국고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광범한 행정적 통제를 행한다.

2) 지방공기업의 수비범위

영국에서 국가공기업의 경우 단일 공기업이 소수의 특정 부문을 독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1970년대에 국유화된 부실기업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이 사기업과 경쟁하는 경

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편 지방공기업 영역에 관한 제도적인 규제는 없고 지방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과 비슷하게 가스, 전력, 교통, 상·하수도 부문에서 일부 운영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유화 또는 민영화로 인해 현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영국의 지방공기업 정책은 지방정부가 민간 개발업자와 유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흐르고 있다. 심지어 각국에서 가장 고유한 지방공기업 사업분야로 간주되고 있는 상수도사업도 민영화로 인해 상당수가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었다.

나. 미국

1) 중앙-지방관계

미국처럼 지리적 규모가 방대하고 인종의 구성이 다양한 행정환경에서 지방은 단순히 중앙에 종속되는 일선부문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서는 완결적인 정치행정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지방은 그들의 거주를 위한 지역적 단위라기보다는 폐쇄적인 국가의 축소판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커뮤니티)로 이어지는 독자성과 자율성은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 규모와 역량의 차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주로 운영이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작으며 주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주(State) 밑의 광역 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는 경찰, 검찰, 징세, 도로, 보건, 생활보호, 초·중학교, 도서관, 소방, 구급, 공원, 폐기물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기초 자치단체인 시(City), 빌리지(Village) 등은 교육, 경찰, 보건위생, 도로, 소방, 상·하수도, 교통사업 등을 운영한다. 주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상 통제수단으로는 조인, 정보제공, 보고, 재정원조, 검사, 심의·승인, 임면, 명령 등이 있다.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미국의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작다. 미국의 역사를 보건대 공기업은 전이나 경제대공황과 같이 위기상황에서 국가적 대응 체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주도적 계획에 의해 작동하는 공기업이 거의 환영받지 못한다는 미국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이다. 두 사업 공히 지방정부 서비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한다. 교통사업은 공기업이 담당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 사기업의 운영난으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버스, 전차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 프랑스

1) 중앙-지방관계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인격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국가적 사무와 지방적 사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방적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한다. 이와 같이 개괄적 수권방식에 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엄격한 행정적 통제방법에 의존하며, 사법적 통제는 영국과는 달리 행정재판소에 의존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수가 3만 6,000개가 넘고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가 오래 전부터 발달되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광역 자치체인 레지옹(Région)의 기능은 자치단체 간의 업무조정 등 극히 일부분에 그치며, 중간단체인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승인, 고속도로, 공적부조, 사회복지 및 공교육 등을 담당한다. 기초 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은 상공업, 도로건설, 민생 등 기타 지방서비스를 담당한다.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과거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역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WTO, FTA 등이 원칙적으로 모든 부문은 민간이 주도하되, 주민복지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경우와 최소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결국 국가 및 지방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상공업 행위에 관한 자유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기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프랑스 정부는 법률에 제한적으로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수비범위를 예외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5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공공설비나 공공용지를 통해서만 기업활동이 가능한 경우_대중교통, 상수도, 가스, 전기 등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확보의무에 해당하는 경우_공영 수영장, 체육관 등
- 민간기업의 참여가 전혀 없거나 경영능력 부족으로 적정한 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¹⁾
- 공익적 경제활동(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한 경우)_연극 공연장 운영, 식품 경영, 주택 공급 등
- 기존에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상·공업형 공공서비스의 확대(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한 경우)_수익성 있는 대중 교통망의 노선 연장 등

라. 독일

1) 중앙-지방관계

연방정부는 지방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관장하며 각 주의 내무성이 기초 자치단체(Gemeinde)에 대한 감독을 주관한다. 그 내용은 신고 및 문서제출의 요구, 지방의회 등의 위

¹⁾ 다만 '특별한 상황'이 정상으로 환원된 때에는 지방공기업 활동을 접어야 한다.

법한 결의에 대한 이의제기, 집행기관의 위법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 집행 등을 통해 행해진다.

주(Land) 밑의 광역 자치단체인 크라이스(Kreis)는 공공질서 유지, 중등 및 직업학교, 주택, 보건·위생, 교통기관의 정비·경영, 에너지 및 용수의 보급, 박물관·병원 운영,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게마인데(Gemeinde)는 교육, 교통, 운수, 소방, 도로, 공원, 토지이용, 건축 등 대부분의 지방사무를 관장한다.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독일의 경우 전체 공기업을 관리하는 통일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인력 통계법(FPStatG)은 △공법 상의 공기업은 “회계체계가 행정기관과 분리되어 있으나 독립성을 지니지 못한 공공기금과 시설”을 의미하고, △사법 상의 공기업은 “행정기관의 지분 또는 의결권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①③). 따라서 독일의 재정 및 인력통계에 의하면 공기업은 “공공의 기금, 시설 및 공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교육, 병원, 위생, 보건 및 복지기관은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

한편 독일 각주의 게마인데 법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을 매우 예외적인 과업으로, 그것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활동 내용이나 그 규모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그 활동수요에 적합한 경우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 내용면에서나 능력면에 있어 다른 수단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방공기업을 설립, 인수 또는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 기업들이 기업운영 상의 위험 내지는 수지전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부문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 상수도, 하수도, 전기·가스, 폐기물처리, 교통 등의 분야가 지방공기업의 대표적인 수비범위로 인정되고 있다.

마. 일본

1) 중앙-지방관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은 기초자치단체의 활동을 지도·감독·조정·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은 주택건설, 도로건설, 병원, 보건소, 쓰레기처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담당한다. 근래에는 복수의 시·정·촌이 공동 운영하는 광역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공업용수도, 공업용지조성, 항만정비, 지하철, 도매시장, 경기장, 박물관, 소방, 공원, 관광사업, 쓰레기처리, 화장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치단체의 재무관계에 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엄격하여 중앙정부는 재무관계의 보고 및 서류·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무감독 및 출납검사를 행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승인을 행한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그 보조조건 및 운영감독을 통한 중앙통제는 매우 엄격하다.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지방공영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철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이며 병원사업은 재무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외의 사업으로서 경비를 주로 당해 사업의 경영에서 수반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은 조례로서 지방공영기업법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데, 간이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항만정비사업, 택지조성사업, 주차장사업, 시장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법인형 지방공사의 영역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 주택공급, 도로, 토지개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출자·출연법인과 유사한 사법인형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영역 등 특별한 규정이 없다.

3.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재구축 방안

가. 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의 명확화

1) 문제점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의무적용사업으로서 수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도 모두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기업의 수를 늘림으로써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책은 ‘지역개발 촉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과 같이 추상적이고도 개념범위가 모호한 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수비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분야에도 지방공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나아가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형태로 검토를 실시하는 등 설립 타당성 검토제도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방안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에 관한 논란은 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사업영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의 범위 조정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하였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다한 법적용 사업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기업성 위주의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수비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개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분야에까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던 것을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 공공성이 큰 사업 분야로만 한정해야 한다.²⁾ 또한 지방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타당성 여부에 관해 용역 전문기관의 주관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은 판단에 의해 사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함을 배제해야 한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사업 이외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의 검토가 아닌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공기업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별도의 절차는 출자·출연기관의 신설 타당성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을 임의적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주민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되므로 지방공기업 수비범위는 크게 축소되며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나. 출자·출연법인 규율체계의 분리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은 일본의 지방공영기업법과는 달리 지방직영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설립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외에 출자·출연법인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큰 지방공기업과 상대적으로 기업성 위주인 출자·출연법인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현행 제도 상 도축장·체육장 등 기업성 위주의 사업을 직영기

²⁾ 종래의 지방공기업법 상의 의무적용사업이 공공성이 큰 사업에 해당할 것이다.

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수도·토지개발 등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일정 기준 이하의 규모로 유지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방안

지방공기업의 법적 유형 간에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함은 사업의 성격 및 공공성·기업성 비중에 따라 사업방식이 결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상식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래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최대한 도입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출자·출연법인은 지방공기업과는 본질상 다르다고 해석해야 한다. 출자·출연법인은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 규율체계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

근래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근거와 형태로 운영중인 소위 '지방 공공기관'의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출자·출연하는 공공기관은 △ 설립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 경우 : 지방공기업법 상의 출자·출연법인, 지방의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 출자·출연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 경우 : 폐광지역 민간개발자, 지역개발법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조성자 △ 설립·출자·출연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교통연수원, 산업디자인센터, 장학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다.

따라서 목적과 성격 상 공공성이 큰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과는 별도로 공공기관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지방공기업법 상의 출자·출연법인은 새로운 법 체계에 의해 규율되면서 지방공기업법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신설 타당성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출자·출연법인의 신설 여지를 엄격히 배제함이 요망된다.

다. 지방공단 사업분야의 명시

1) 문제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설립·경영하는 공기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등 제도적으로도 양자의 설립목적이나 성격상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단도 지방공사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 실무적으로는 양자의 설립취지와 성격은 크게 다르다.

지방공사는 다분히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분야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하는 독립채산적 기업으로서 도시개발·유통·지하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공단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별도로 설립하여 전담 대행케 하는 산하기관으로서 주차장·환경시설·체육시설 등 대부분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 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개념이나 활동영역에 관한 구분이 없어 지방공기업 실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 특정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공사가 적합한지 지방공단이 적합한지에 대한 구분 근거가 없으며, 양 조직형태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어느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지방공단은 현실적으로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행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상의 '손익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경상수지 5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방안

직접경영, 간접경영, 합동경영과 같이 경영방식 간에 차별 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사업의 성격 및 공공성·기업성 비중에 따라 사업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관한 장을 따로 두고 각각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대항사업에 한정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즉 지방공단의 고유 영역인 자치단체 시설물 및 영조물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항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항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50% 기준'을 배제하되, 경영의 기본원칙으로서 경비절감효과 의무를 별도로 설정함이 요망된다.

4. 결론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수비범위는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이에 힘입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방공기업을 통해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개발 촉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자치의 재정적 및 자치경영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다만 작금에 이르러 국가부문과 마찬가지로 지방부문에서도 민간의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종래 경제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활발하였던 나라에서도 이제는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 공공부문의 역할 범위도 더불어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를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축소를 통해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을 좀더 활성화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출자·출연법인의 규율체계의 변화와 지방공단의 영역 재획정 문제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축소가 지방공기업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 서울 : 법문사, 2010
- 사를르 드바쉬, 박연호·박균성 공역, 프랑스행정의 이해, 서울 : 박영사, 1997
- 안전행정부, 2013 지방공기업현황, 2013
- 유훈·배용수·이원희,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2010
- 임성일, 영국의 지방정부, 서울 : 법경사, 1996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각호, 2012·2013
-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6
- 하인리히 솔러, 김해룡 역, 독일 지방자치법 연구,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4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지방공기업의 적정 사업영역 및 출자범위 연구, 2007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2008·2012

여름내 약해진 체력... 환절기 건강관리 조심!

-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여름내내 더위를 이겨내느라 몸 안의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 상태.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가을철 영양 보충에는 감, 밤, 은행, 호두 등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글 • 김용서(효소미네랄한약연구소 소장, 전곡한의원 대표원장)

● 유난히 긴 장마로 후덥지근하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환절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 갑자기 바뀐 외부 환경에 우리 몸의 신체 저항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신체 저항능력이 약해지는 환절기, 가을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간 자칫 감기 등 환절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특히 가을에 유독 감기 환자가 많은 건 밤낮의 심한 기온차를 인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체내 균형이 깨지면서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감기에 안 걸려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병의 근원인 감기는 빨리 치료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병을 유발시켜 만성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외상 감기'로 외부의 나쁜 기온

이 몸 안에 침입해 감기 증상을 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상 감기'로 평소 몸이 허약해 저항력이 약해진 경우 감기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감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리 단순한 병이 아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그 원인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 가벼운 발열, 두통, 기침, 콧물 등으로 그치는 게 보통이지만 간혹 기관지염, 폐렴, 축농증, 중이염 등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단순한 감기라도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평소 충분히 휴식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방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제철 음식으로 약해진 체력 보강해야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동안 쌓였던 피로



와 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가을철 영양 보충에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을철에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과일로는 감, 밤, 은행, 호두 등을 꼽을 수 있다.

감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이어서 소화흡수가 잘되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며 타닌이라는 떫은 성분이 들어있다. 비타민A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피부를 탄력있게 해준다. 또 타닌은 체내에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 배탈을 치료해주며 지혈작용이 있어서 피를 토하거나 뇌일혈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좋은 약이 된다.

밤 속에는 칼슘, 철, 나트륨 등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무기질과 비타민C가 푸짐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 감기, 무기력증을 예방할 수 있다. 술안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은행 알은 당질 단백질, 레시틴, 비타민D의 모체가 되는 에르고스테린이 들어있다. 은행 알은 하루 5~6개가 알맞다. 기침과 가래를 삭히는 데 좋고 어린이의 야뇨증을 치료해준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호두는 환자나 몸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회복이

빨라진다. 겨울철에 추위를 쉽게 이겨내며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인에게 정력제가 되고 입시생들의 정신을 맑게 해준다.

효소 미네랄 약재로 방어력 높여야

계절이 바뀌면 자기 몸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으로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수치 등을 알아보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좋다. 간혹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쉽게 피로하고 몸이 나른해지고 무거우면서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몸에 병균이 침범하면 인체는 건강을 회복하고 병균을 이겨내기 위해 체내의 방어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체가 여름내내 더위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인체는 더위에 대한 각종 적응반응을 나타낸다. 이 적응반응은 신경내분비계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호르몬을 한의학에서는 '정(精)이라고 말한다. 효소 미네랄 약재는 바로 이 정의 기능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인체가 여름내내 계속해서 더위를 이겨내느라 몸 안의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갈되기 때문에 환절기가 오면 여러 가지 반응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 감기에 걸리고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나 복통, 설사 등의 위장질환을 특히 잘 앓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같은 감염질환의 예방과 위나 장의 무력증을 없애기 위해 효소 미네랄 한약을 써 방어력과 활력을 키운다. 🍊

다시 올 수 없는 옛날이여!...비용

- '혹시나' 해서 산 복권이 '역시나'로 끝났을 때, 판매사원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덜컥 계약금을 냈다가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불량품임을 알았을 때, 잘 모르고 시킨 음식을 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을 때... 이럴 때 느끼는 본전 생각이 바로 '비용'이다.

글 • 오영수(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오영수 교수의 매직 경제학' 과 '오영수 교수의 경제학 갤러리' 의 저자)

● '비용'(Cost)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 시내버스를 한번 타는 비용은 1,050원이고, 택시의 기본 승차 요금은 3,000원이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행위나 선택에 소요되는 금전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비용도 회계적 비용, 경제적 비용, 명시적 비용, 묵시적 비용, 한계 비용, 매몰 비용, 기회 비용, 자본 비용 등. 정말 골치 아프게 많



다. 여기서는 이 많은 비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되는 몇 가지 비용들을 생각해보자.

점식식사를 위해 중국집에 갔다. 4,000원짜리 자장면을 시켜 놓고 한 입을 먹는 순간 너무 맛이 없어 곧 후회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짬뽕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손님에게 할인해서 되팔 수도 없으니 먹든 안 먹든 돈은 내야한다. 그러니 음식을 입에 대는 순간 4,000원은 이제 주머니를 떠나야 할 운명이다. 이처럼 한번 지출되고 나면 다시는 되건질 수 없는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가라앉아버린 비용, 즉 '매몰 비용'(Sunk Cost)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재화에 대해 지불한 가격에서 그 재화를 되팔아 건질 수 있는 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한계 비용과 기회 비용은 같은 말이다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사서 일년을 타다가 팔면 7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자. 이때 당초에 지불한 1,000만 원은 자동차 구입에 들어간 회계적 비용임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다. 그런가 하면 새 자동차 한 대를 갖기 위해서는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의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또는 기회)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그러면 새 자동차를 살 수 있는 1,000만 원이라는 기회 비용은 1년이 지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1년 뒤에 자동차 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 사라진 300만 원은 이제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건질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이미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비용은 앞으로의 선택에 참고가 될 만한 경험이나 교훈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선택에서 문제가 되는 비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재화를 얻는 대가로 포기해야 할 다른 재화의 가치, 즉 기회 비용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1,000만 원이 1년 뒤에는 700만 원의 기회 비용과 300만 원의 매몰 비용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자동차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는 700만 원의 기회 비용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이미 가라앉은 300만 원을 아



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회 비용은 자동차처럼 천천히 줄어들 수도 있는가 하면, 자장면처럼 입에 대는 한순간에 매물 비용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기회 비용이 매물 비용으로 바뀌는 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그러한 선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그 자체가 한계 선택이고, 그 선택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한계 비용) 역시 또 다

른 새로운 기회의 상실(기회 비용)이므로, 한계 비용과 기회 비용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계 비용’도 그 속성에 있어서는 기회 비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경쟁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재화의 가격은 재화의 기회 비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화의 가격 = 기회 비용 = 한계 비용’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공급 역시 한계 비용과 연관 있다

‘공급’(Supply)이라는 것도 바로 생산상의 한계 비용 조건을 고려한 공급자의 심리적인 일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급의 기본적인 개념은 수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매 단위에 대한 ‘지불의사의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달리, 공급 곡선은 재화의 매 공급량에 대해 ‘꼭 받아야 할 최소한의 가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공급자가 그 재화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한계 비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바로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

“매물 비용이니 기회 비용이니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나 잘해 보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꼭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니 만큼 좀더 경제적인 대화를 위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